

제 370 호

1973. 5. 1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444·6090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1362 호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직제증개정규칙	3
◎ 고 시		
제 29 호	배합사료성분 등록고시	4
제 71 호	사료성분 등록고시	5
제 72 호	"	6
제 73 호	" 갱신고시	6
✓ 제 74 호	계류중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설 변경 및 실시 계획인가	8
◎ 공 고		
제 90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표자 및 주소변경 공고	10
제 92 호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변경 및 대체 지정공고	10
◎ 사 령		12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642

규 칙

서울특별시 공원관리사무소 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3년 5월 4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302 호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
직제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원관리사무소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2를 삭제한다.

제2조 제1항중 "지방임업기과"를 "지
방농림기과"로 한다.

제4조중 "사무분장"을 "남산 및 북
악공원관리사무소"로 하고 "지방임업
기사"를 "지방농림기사"로 한다.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어린이대공원 관리사무소) ①
사무소에 서무계, 운영계 및 시설관
리계를 두고, 서무계장과 운영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시설관리계장은 지방
농림기사로 보한다.

②사무소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무계

가. 문서, 편인 및 기밀

나. 인사, 예산, 회계 및 용도

다. 물품, 장비의 관리

라. 예표, 수표

마. 공원내 출입의 통제와 경비

바. 공원내 청소미와

사. 타계주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운영계

가. 공원운영의 종합계획

나. 공원내시설의 운영 및 운영의

지도통제

다. 공원내 질서의 유지

라. 공원이용자에대 하안내, 공보와

편의제공

마. 공원내 출입자의보호·간호 및

이상의 수공보호

3. 시설관리계

가. 공원개발의 종합계획

나. 공원시설의 설계·시공감독과 유
지보수

다. 수목및 동물유지관리·보호

라. 기계·전기설비의시설·유지보수

마. 동물원·식물원·꽃묘포장·동물
방사원의 관리

제5조중 "관리계장"을 "주무계장"으
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3년 5월 5일부터 시행
한다.

12-4

제 370 호

시 보

1973.5.10

고 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료성분 등록을 고시한다.

② 서울특별시사료성분등록고시 제 29 호

사료성분 등록 고시

등록번호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사 료		
				종 류	명 칭	용 도
	대원 사료상사	풍납동 355-1	강익현	배합사료	농축 배합사료	농축 배합사료

등록번호	사 료 성 분 양				유효기간	비 고
	최 소 량		최 대 량			
	조 환 배 질	조 지 방	조 성 유	조 회 분		
	%이상 16.0	%이상 2.0	%이하 4.5	%이하 13.0	1973.5 1975.5	

배합비율 : 옥수수	60 %	패 분	1 %
대식박	10 %	동할성박류	4 %
임 박	10 %	소 맥 쎄	10 %
소 비 피	5 %	계	100 %

◎서울특별시고시제 71 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

사료성분등록고시

1973. 5. 4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서울특별시장

사료성분 등록사항

등록번호	공 장 명	소재지	대 표 사	성 명	종 류	경 찰 용 도
3~88	중앙축산사료 주식회사	동대문구 상봉동320	유창열	배합사료	유모양겨 후기 배합사료	연우대학 4 이상 육성코센디
3~89	"	"	"	"	"	관성공세미
3~90	"	"	"	"	"	농축농축사료 농축사료
3~91	"	"	"	"	"	축우

등록 번호	사 료 성 분 량				유효 거 간 이 무터 까지	고
	최 소 량	최 대 량	조 심 유	조 회 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3~88	이상 16.0 %	이상 2.5 %	이하 6.0 %	이하 10.0 %	73.5 75.5	신 구 농 축
3~89	16.0 %	2.5 %	6.0 %	10.0 %	.	.
3~90	16.0 %	2.0 %	4.5 %	13.0 %	.	.
3~91	16.0 %	2.0 %	4.5 %	13.0 %	.	.

※ 농축배합사료원료별 배합비율 옥수수 60 % 박류 30 % 곡분 10%

㉔ 서울특별시고시 제 72 호 한다.
 사료성분등록고시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1호의 1973. 5. 4.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서울특별시장

사료성분등록사항

등록 번호	공장명	소재지	대표 성명	사 료		
				종 류	명 칭	용 도
3~87	영육농장 사료공장	동대문구신내 동 528	김영희	배합사료	농 축 배합사료	양 계 용 농 축 사 료
등록 번호	사 료 성 분 량			유효기간 부터 까지	비 고	
	최 소 량	최 대 량				
3~87	조단백질 이상 16.0 %	조지방 이상 2.0 %	조섬유 이하 4.5 %	조회분 이하 13.0 % 75.5.	73.5. 75.5.	신규 등록

㉕ 서울특별시고시 제 73 호 한다.
 사료성분등록갱신고시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2호의 1973. 5. 4.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서울특별시장

사료성분등록사항

등록 번호	공장명	소재지	대표 성명	사 료		
				종 류	명 칭	용 도
3~45	중임축산사 료주식회사	동대문구 상봉동 320	유창열	배합사료	부르일터후기 배합사료	부과후대략 4 주이상 완성용하이
3~46	"	"	"	"	큰병아리	부과후대략 13 주~ 초산까지 (후기)

등록 번호	공장명	소재지	대표 성명	사 보		
				종류	명칭	용도
3~47	중앙축산사 로수식회사	동대문구 삼봉동 320	유창열	배합사료	산란조기용 배합 사료	초산후대략 20 주~ 까지부로일려종계
3~48	"	"	"	"	"	초산후대략 20주~ 까지산란용종계
3~49	"	"	"	"	산란말기용	초산후 대략 36 수이상
3~50	"	"	"	"	산란중기용	초산후 대략 21~35 수
3~51	"	"	"	"	이른기초	기초배합 사료용
3~52	"	"	"	"	식물성기초	"
3~53	"	"	"	"	축산물기초	"
등록 번호	사 료 성 분 량				유요기간 부터 까지	비 고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3~45	16.0% 이상	2.5% 이상	6.0% 이하	10.0% 이하	73.5. 75.5.	경 신
3~46	12.0%	2.5%	7.5%	10.0%	"	"
3~47	15.0%	2.0%	7.0%	13.0%	"	"
3~48	15.0%	2.0%	7.0%	13.0%	"	"
3~49	14.0%	2.0%	8.0%	13.0%	"	"
3~50	14.0%	2.0%	7.0%	13.0%	"	"
3~51	50.0%	5.0%	2.5%	20.0%	"	"
3~52	35.0%	3.0%	8.0%	7.0%	"	"
3~53	40.0%	8.0%	3.0%	33.0%	"	"

㉔ 서울특별시고시 제 74 호

제류중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설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 고시 제 407 호 (71.7.7)
로 시설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공고
제 27 호 (72.2.7) 로 시행허가된
시내서대문구갈현동산 123-1 의 4 필
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지적승
인 변경과 동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73.4.4) 에 의하여
이해 고시한다.

1973. 5. 10.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역위치 : 시내서대문구갈
현동산: 123-1의
4 필지

2. 사업의종류: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명 칭: 갈현동주택단지

시행면적: 10,536 평

3. 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 시내서대문
구갈현동6-6
정 연 백

4.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 수: 1973.5.

준 공: 1973.12.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의
외 권리명세 (생략)

6.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

7. 변경사항

가. 가로방변경조서 (별첨도면참조:
기허 고시된 도로는 폐지하고
다음 가로방을 신설)

등급	류 번	번 호	폭 원	연 장	면 적	기 점	중 점	비 고
소로	3	1	6미터	201미터	1,206	구회정리지구제	소3-3	
"	"	2	"	222 "	1,293	소3-4	소3-1	

등급	유별	번호	폭 원	연 장	면 적	기 점	종 결	비 고
소토		3	6미터	192미터	1,116	소 3 - 1	소 3 - 1	
"		4	"	240미터	1,401	"	소 3 - 7	
"		5	"	17미터	84	구획정리지구제	소 3 - 4	
"		6	"	26미터	135	"	소 3 - 4	
"		7	"	43미터	240	"	소 3 - 2	
소토	4	1	4미터	201미터	784	소 4 - 2	소 3 - 1	
"		2	"	57미터	216	구획정리지구제	소 3 - 3	
"		3	"	130미터	496	소 3 - 3	"	
"		4	"	61미터	232	구획정리지구제	소 3 - 1	
"		5	"	75미터	252미	소 3 - 4	"	

나. 아동공원 변경조서

구 분	시 설 명	면적(평)	위 치	비 고
기 정	아 동 공 원	317	시내서대문구갈현동산123-4	
변 경	"	317	"	위치변경

다. 주차장 및 쓰레기처리장(신설)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주차장및쓰레기처리장	시내서대문구갈현동산123-1	50평	

8. 인가내용: 별첨인가조서(생략)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 311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자 및 주소변경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대표자 및 주소변경을 서울특별시
단치 감독규칙 제 5 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3. 5. 7.

서울특별시장

조 합 명	구 분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시멘트 가공업협동조합	변경후	조동호	종로구 공평동 138-1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3층)	74-2194
	변경전	상 동	중구 을지로 5 가 25	23-2827
서울특별시 메리야스 공업협동조합	변경후	조승호	중구 을지로 5 가 271-6	27-9708
	변경전	최우정	상 동	상 동
서울특별시철재가구 공업협동조합	변경후	이지선	송구 수포동 35-6	27-1885
	변경전	안덕우	상 동	상 동

◎ 서울특별시 공고 제 312 호

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
변경 및 대체 지정 공고

당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지정

업체의 상호(기업체명) 대표자, 소재
지, 변경사항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
지원요령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및 대체 지정
공고한다.

1973. 5. 8

서울특별시장

1. 변 경									
변 경 전					변 경 후				
지정 번호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 품명	지정 번호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 품명
529	삼미 염공 주식회사	김동호	성북구 하월곡동 90	염직물	529	삼미 염유 주식회사	김동호	성북구 하월곡동 90	경직물
537	해의 섬유 주식회사	최동학	성북구 하월곡동 70-4	트리코트	537	해의 섬유 주식회사	최동학	성북구 하월곡동 70-4	트리코트
807	주식회사 미성 핸드백	박수범	용산구 원효로 1가93	핸드백	833	주식회사 미성 핸드백	박수범	서대문구 성산동 141-1	핸드백
2. 대 체 지 정									
지 정 취 소					대 체 지 정				
지정 번호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 품명	지정 번호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 품명
319	위만 산업사	박만규	동대문구 면목동 104-695	웨타	319	위만 산업 주식회사	박만규	동대문구 면목동 104-695	웨타
459	기무연 상사	김희석	성동구 미천동 206	"	459	주식회사 기무연 상사	김희석	성동구 미천동 206	"

<p style="text-align: center;">사. 명</p> <p>◎ 1973.5.3</p> <p>구회정리제 2과. 지방토목기사코 남 상 욱 원에 의하여 그 직을 연합 서대문구보건소 조건부지방보전기사보 김 광 욱</p>	<p>지방보전기사보에 임함 2호봉에 급함 서대문구 보건소 근무를 영함 김 수 회 지방기계기원보 시보에 임함 자동차 운수사업소 근무를 영함</p>
<p>시 울 특 별 시 장</p>	